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5월 10일

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,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 - 위 원 장 : (당초)구미보건소장 → (변경)부시장
 - 부위원장 : (당초)위원 중 호선 → (변경)구미보건소장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부시장, 구미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